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

```
제정 1977. 6. 13 조례 제 260호
개정 1980. 7. 3 조례 제 386호
개정 1984. 2. 14 조례 제 665호
개정 1994. 12. 30 조례 제1343호
개정 1996. 7. 18 조례 제1495호
개정 1999. 6. 14 조례 제1628호
개정 2003. 5. 16 조례 제1814호
개정 2007. 10. 1 조례 제2063호
일부개정 2008. 6. 18 조례 제2099호
전부개정 2011. 11. 2 조례 제2362호
일부개정 2011. 11. 10 조례 제2781호
일부개정 2017. 3. 6 조례 제2802호(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 2017. 5. 18 조례 제2827호
일부개정 2018. 7. 12 조례 제2861호
전부개정 2021. 5. 13 조례 제3313호
```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「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공설장사시설"이란 안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.
- 2. "분묘"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3. "납골평장"이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지정된 장소에 봉분 없이 30센티 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는 것을 말한다.
- 4. "공설묘지"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.
- 5. "공설묘지의 재개발·공원화 사업"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묘지를 수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·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6. "차상위계층 장제비"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 위계층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·운반·화장·매장 등 장제조치에 필 요한 비용을 말한다.
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시가 설치·운영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. 다만,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 를 적용한다.
- 제4조(책무) 안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
 - 2. 화장·납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·홍보활동
 - 3. 선진·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묘지의 재개발·공원화 사업의 추진
 - 4. 재해로부터 장사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재대책 수립ㆍ시행
- 제5조(묘지 등의 수급계획) ① 시장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고 한다)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수립된경기도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·장기수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·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·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6조(시범장사시설의 설치·관리)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,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·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·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,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.
- 제7조(민간자본의 유치)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·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·비용,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2장 공설장사시설의 관리·운영

- 제8조(명칭 및 위치) 공설장사시설의 시설별 명칭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.
- 제9조(공설묘지 사용신고)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사용 자격 및 범위) ① 공설묘지 사용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에 한정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.
 - 1. 배우자 중의 1명이 공설묘지에 이미 안치되어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 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. 다만, 이 경우에는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2. 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
 - 3.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관외에 거주하는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모, 자녀가 사망하여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 - 4. 「출입국관리법」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
 - 5.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 - 6. 그 밖에 시장이 공설묘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11조(납골평장시설 사용면적 및 설치비) ① 납골평장시설의 사용면적 및 설치비 등은 별표 2와 같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설묘지의 재개발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사용면적 및 설치비 등을 정할 수 있다.
 - ③ 납골평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고와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설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납골평장시설 설치비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설치비를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
 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자와 의료급여 수급자
 - 2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・공헌자

- 3. 「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
- 4. 그 밖에 시장이 설치비의 50퍼센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 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
- 제14조(사용권리의 승계) ① 공설묘지의 사용권리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고자가 승계할 수 있다.
 - ② 사용권리를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사용신고수리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의 사용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.
 - 1. 사용신고한 묘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. 다만, 상속 또 는 제15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2.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
 - 3. 시장이 기존 공설묘지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4. 사용신고한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
 - 5.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나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
- 제16조(원상복구 및 변상) 공설묘지의 사용자·수탁자 및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 내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 또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17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시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 화장·봉안한다.
- 제18조(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)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차상위계층이 사망할 경우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장제비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비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중복하여 지원하는 경우

(추 1)

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3장 그 밖의 사항

- 제19조(분묘의 설치기간)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30년 으로 하되,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장 기간은 10년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의 계산은 분묘의 설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- 제20조(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) 영 별표 3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"조례가 정하는 장소"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도로, 철도, 하천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
 - 2.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, 학교,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
- 제21조(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)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과 같다.
 - 1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시장이 지정·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. 다만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2. 산사태·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 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2021. 5. 13 조례 제3313호 전부개정>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화장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원일 전에 화장한 경우에 한 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3조(공설묘지 사용 자격 및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) 공설묘지 사용 자격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원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 용한다.

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

[별표 1]

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(제8조 관련)

명칭	위 치	비고
안양시 청계공설묘지	의왕시 청계동 산 8-5 일원	
안양시 안산공설묘지	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445-4 일원	
화성 함백산추모공원	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 12-5번지 일원	

[별표 2]

납골평장시설 사용면적 및 설치비(제11조 관련)

(단위: 원)

사용면적	설 치 비		관외 거주자 가 산 율	מן יי
	기 준	금 액	가 산 율	비고
0.8 m ² (80cm×100cm)	1구당	700,000	50%	

- 1. 설치비: 재료비(비석, 잔디 등), 설치인건비
- 2. 당일 합장은 설치비의 1/2 금액을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며 당일 이외 합장은 1구당 설치비와 동일
- 3. 납골평장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